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관세행정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세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그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관세환급 제도를 잘 몰라 물품을 수출하고도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세
환급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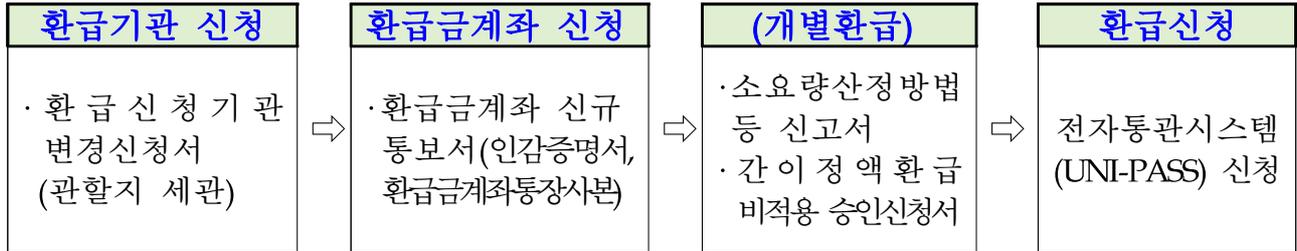
관세환급 상담(전화, E-mail,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에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3. 13.

서울본부세관장 정승환

알기쉬운 관세환급 신청 매뉴얼

□ 환급신청 전 제출 서류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이 소재하는 관할지 세관에 신청, 최초 환급신청의 경우 관할지 세관은 관세청으로 되어 있어 “환급신청기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 (담당 : 02-510-1365)
-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서류는 환급신청 방법의 종류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음
 - 간이정액환급 : 환급금계좌통보서 (담당 : 02-510-1365)
 - 개별환급
 - 환급금계좌통보서 (담당 : 02-510-1365)
 -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 (담당 : 02-510-1367)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신청서 (담당 : 02-510-1362)

※ 환급 관련 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홈페이지 하단) 관련 누리집> 관세법령정보포털> 법령·판례 등> 행정규칙> 고시> 11.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표·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 해설

구분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	·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제조자(임가공위탁자)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제조자)으로 기재된 자
환급방법	·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원재료별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환급	·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은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만 확인하고 수출금액에 일정률의 환급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정액환급률표에 HS10단위가 계기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 또는 제조자가 아닌 자가 수출한 물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정액환급률표에 HS10단위가 계기된 수출물품 수출물품의 제조자(국내위탁생산 포함) 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자 <p>⇒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환급보다 우선 적용됨</p>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입신고필증 등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업체에서 자율계산)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건표) 및 자재 명세서(BOM) <p>※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국내구매된 상태 그대로 수출할 경우 소요량 계산서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 등 제조사실 증빙서류
환급대상 수출	관세법에 의한 유상수출, 보세공장 등에 물품공급, 수·위탁 가공수출 등	
환급신청 기간	<p>환급대상원재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p> <p>* 2022.12.31. 환급특례법 개정(제14조제1항)됨에 따라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다만 2021.1.1. 수출분부터 환급신청 기간을 5년으로 적용됨을 유의</p>	

○ 개별환급 가능 주요 사례

- 1) 수입자가 제조·가공한 후 수출하거나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납부세액 증명서류 : 수입신고필증
- 2) 제3자가 수입한 것을 수입상태 그대로 양도받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납부세액 증명서류 : 분할증명서
- 3) 제3자가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양도받아 수출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수출한 경우
⇒ 납부세액 증명서류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 사례 2)~3)번의 분할증명서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양도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에서 발급

○ [체크사항] 간이환급 적용대상

- 위탁생산의 범위 :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생산만을 위탁하고 그에 따른 임가공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 해당 여부(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및 제조 여부 확인서류[예: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출해야 함
-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도·소매업자 등 비제조 업체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구매한 물품의 제조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받아서 개별환급 신청은 가능(FAQ 참조)

□ 적용법령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 위 법령 게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문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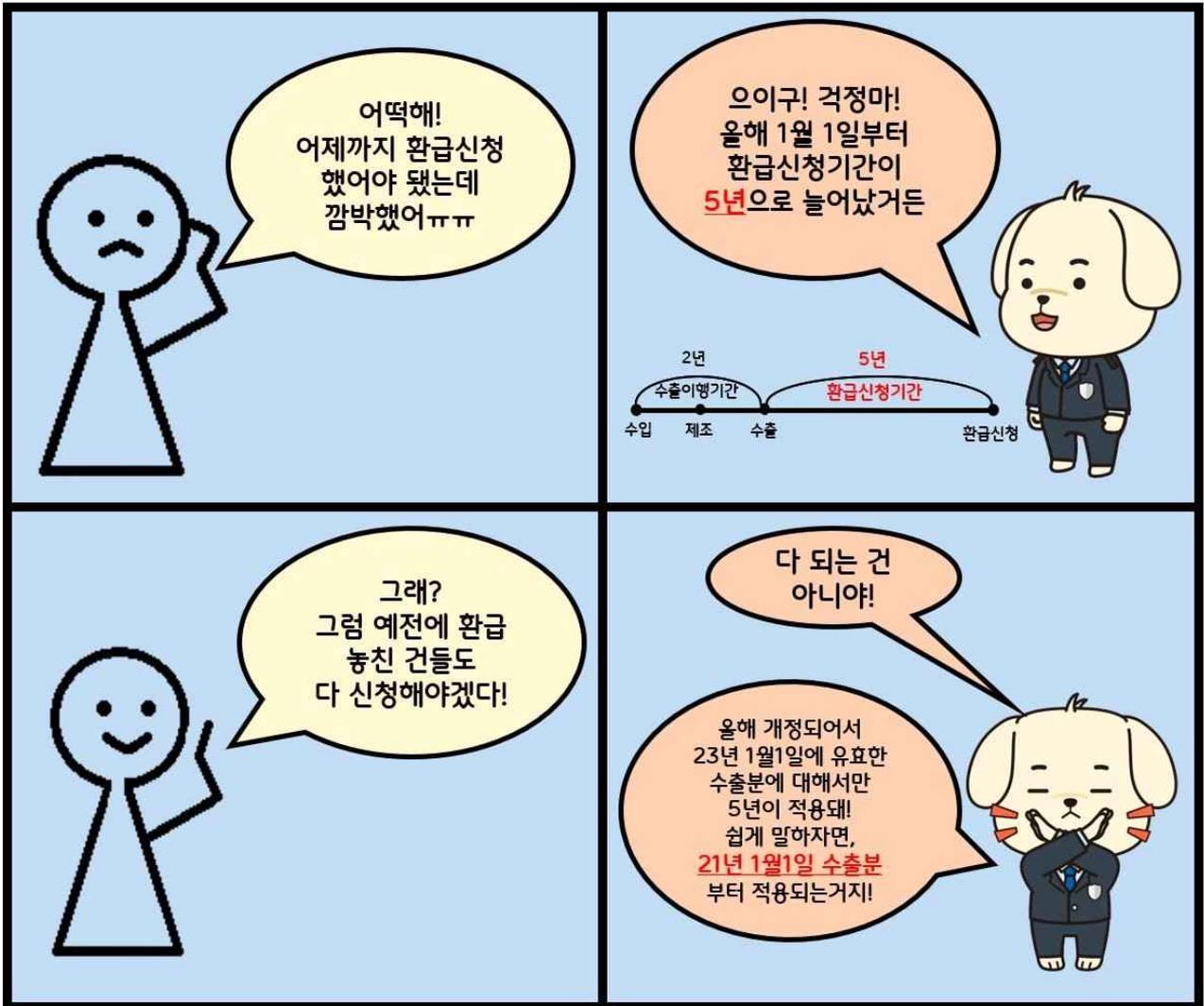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기업부담완화제도 > 관세환급 > 관세환급, 꼭 챙겨 주세요”를 이용할 경우 관세환급 개관, 관세환급절차 등을 상세히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서 작성 대행 및 환급금 신청대행 등 문의는 관세사 사무실에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세관 환급심사과”에 전화 등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2-510-1360, 1362, 1363, 1365, 1366

그림으로 알아보는 관세환급특례법 FAQ

1 2023년도 환급신청기간 어떻게 달라졌나요?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이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다만 2021.1.1. 수출분부터 환급신청 기간을 5년으로 적용됨을 유의



2 간이정액 환급방법을 선택시 환급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중소기업체가 직접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여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는 경우 정확한 품목번호(HS10단위)를 전제로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시: 보건용마스크 KF94(HS 6307.90-4020)]



수 출 신 고 서(수출이행,감지)

세번번호	6307.90-4020	순중량	1,000(KG)	수량	100,000(PC)	신고가격(FOB)	\$74,345
							₩89,000,000

국가	한국	해당년도	2021년
품목번호	6307.90-4020	단위(중량/수량)	KG /
품명	국문	보건용 마스크	
	영문	For hygienic purpose	
간이정액환급	10 원 (2021-01-01 ~) (10,000원당 환급액)		

□ 산출공식

$$\text{간이정액환급액} = \frac{\text{수출신고필증상FOB}\$}{10,000} \times \text{간이정액환급율}$$

☞ 환급금 = (89,000,000/10,000) × 10원 = 89,000원

3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¹⁾하는 경우, 수출자 B社は 국내 판매자 (제조자)인 A社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²⁾를 발급(양수)받아야 하며,
- 수출자인 B社は 발급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수출자 환급신청(환급거래구분 '25')
 - (1) 수출신고서 상 기재항목 체크사항: ②수출화주: B ③제조자: A ⑩거래구분: 11(일반형태) ⑳환급신청인: 1(수출화주)
 - (2) 기납증: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국내 제3자(수출자, 제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급되는 납부세액증빙서류



4 국내에서 구매한 '외국산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이 외국産인 경우, 동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¹⁾하는 경우, 수출자 B社는 국내 판매자 A社로부터 분할증명서(분증)⁽²⁾를 발급(양수)받아야 하며, - 수출자인 B社는 발급받은 분증을 근거로 수출자 환급신청(환급거래구분 '02')

(1) 수출신고서 상 기재항목 체크사항: ②수출화주: B ③제조자: 미상 ⑩거래구분: 72(원상태 수출) ⑫환급신청인: 1(수출화주)

(2) 분증: 외국으로부터 수입원재료(상품 포함)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 그대로 국내 제3자(수출자, 제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급되는 납부세액증빙서류



5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받을 수 있나요?

- OEM 생산은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재료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수탁자 (실제 임가공 수행 업체; 생산업체)에게 제공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OEM 방식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주재료를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제조자 지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제조자 만이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방법으로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양수받아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3번 사례 참조).



6 위탁가공무역 목적으로 외국에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 ① 일본에서 원자재(yarn)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원단(fabrics)을 ② 베트남 공장에 무상 수출[③ 베트남에서 임가공(의류 생산) 후 유럽, 미국 등 제3국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방법

(1) 수출신고서 상 기재항목 체크사항: ②수출화주: (주)한국 ③제조자: (주)한국 ⑩거래구분: 29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⑫결제방법: PT(임가공지급방식) ⑯환급신청인: 2(제조자)

(2) 환급신청서 상 기재항목 : 5. 수출물품(개요) ②환급수출형태: 20

※ 원재료의 조달경로와 동 원재료의 제조가공 유·무에 따라 환급방법이 상이



7

고춧가루를 수입하여 고추장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조과정이 간단하고 소요량이 안정적이어서 관할시청에 제출한 식품 제조품목허가서에 표시된 고춧가루 투입비율을 근거로 단위설계소요량을 산정할 경우 소요량산정이 간단할 수 있으나 농·수·축·임산물을 소요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요량산정방법은 수출건별로만 산정하여야 된다고 해서 산정방법신고서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수출건별로 소요량을 산정할 경우 당사는 수출건이 많아 건별 소요량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식품 제조품목허가서에 기재된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한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지?

<고추장 제조과정>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소요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소요량산정방법은 수출건별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과정에서의 소요원재료의 등급에 차이가 없으며, 소요량이 안정적이라면 산정방법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세관장에게 소요량이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다른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신고된 식품 제조품목허가서에 표시된 투입비율 대로 수출물품이 생산된다면 식품 제조품목허가서에 기재된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한 단위설계소요량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율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 산정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는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참조>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안내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는 무엇인가요?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는 환급을 신청하기 전 소요량 계산의 적정 여부 등을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어떤 이점이 있나요?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면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환급 대상 여부, 부산물 계산 등 복잡한 소요량 계산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잘못된 소요량 계산으로 인한 사후 추징 또는 과소 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대상을 알려주세요.

개별환급 업체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적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요량 사전심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 설명서 등」을 작성하신 후 관할지 세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
법령·판례 등>별표/서식에서 검색

소요량 사전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01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접수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접수
(관할지 세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02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심사

(필요시 현지 확인 병행)
자료 보정 필요 시 보정 기간 20일 추가

03

결과 통지 (30~50일 정도 소요)

사전심사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재심사 신청 가능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통지받은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사전심사 결과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전 신청내역과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가능)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하단 서류 중 해당 자료 제출)

-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변경내용 포함)
- 제품별 원가계산서 (요청 시)
- 생산일보 (작업일보)
- 원재료수불대장
- 제품수불대장
- 부산물 수불대장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소요량계산서철
- 품목별, 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및 변동 명세서
- 수출물품의 단위실량 확인자료 (손모율로 관리 시)
- 제품별, 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산출 근거
- 제품별, 소요원재료별 부산물공제비율 산출 근거
- 결산보고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 시)
- 위탁가공계약서 (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 시)
- 납부증명서 확인서류
- 수입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등
- 수출사실 확인서류 (관련 수출입신고필증)
- 수출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등

소요량 사전심사 후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신청업체에서 수출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건에 대한 환급은 통지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 510-1367/8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별관 2층 환급심사과